

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3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2. .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 확대
(안 제5조의2)

“조례로 정하는 경감율”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→ “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”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.

3. 개정 조례안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(일부개정안)

5. 예산 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6. 관계 법령 발췌서: 덧붙임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예고 기간: 2026. 1. 22.~2026. 2. 11.(20일간)
- 나. 의견 내용: 의견 없음

8. 부서 협의 결과

- 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: 해당 없음
- 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: 개선의견 없음

다. 부패영향 분석평가: 원안 동의

9. 참고 사항: 해당 없음

10. 관련 부서 : 경기도 세정과

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”를 “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·”를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,”로 한다.

제5조의2 중 “조례”를 “각각 조례”로, “100분의 50으”를 “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감면함에 있어”를 “감면할 때”로 한다.

제11조의2 본문 중 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”을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세정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 · 성명	세정과장 전 도 익
	팀장 직위 · 성명	재산세팀장 김 정 민
	담당자 성명 · 전화번호	김 정 민 (031-790-5119)

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,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]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④ (생략)

제4조(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)

① (생략)

②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·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)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제5조의2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

조제1항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(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7조, -----

-----.

제5조의2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

관계법령 발췌서

1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[시행 2026. 2. 1.] [법률 제20727호, 2025. 1. 31., 타법개정]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 면, 세액공제,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“지방세 감면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75조의2(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,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,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,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